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Law School Libraries

김원만(Won-Man Kim)*
이지연(Jee Yeon Lee)**

초 록

본 연구는 법학전문도서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평가 내용을 다루어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법학전문도서관의 주 이용계층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을 위한 평가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법학전문도서관의 건물과 시설 그리고 소장자료의 양과 함께 소장자료의 질, 법학도서관 사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며, 외적인 면과 함께 법학전문도서관의 내실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and issues for law school library evaluation. Also, this study suggested the roles and guidelines for law school libraries to perform its own role and function. To carry out the research, surveys were conducted with the law librarians. Then survey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law school students' demands and behaviors. Especially this study evaluated law libraries which were not carried out independently and professionally until now and meaningful as it thoroughly investigated users' demands and behavior with law school libraries and function and roles of law librarians. To facilitate law school library services and functions, quality of the collections, librarians' role, and users' need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buildings and physical facilities. Particularly, users' needs assessment and librarians' opinion survey will be imperative in implementing evaluation.

키워드: 법학전문도서관, 법학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인가기준, 평가
law school library, law library, law school, approval, standard, evaluation

*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1man@yonsei.ac.kr)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lee01@yonsei.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0년 2월 18일 ■ 최초심사일자: 2010년 2월 28일 ■ 게재확정일자: 2010년 3월 1일
■ 정보관리학회지, 27(1): 165-183, 2010. (DOI:10.3743/KOSIM.2010.27.1.165)

1. 서 론

2009년 3월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목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 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그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윤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보다는 단순히 암기력 시험만을 거쳐 법조인을 선발해왔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위 고시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고급인력들이 고시에만 매달리는 국가 인력 활용의 애곡상태를 시정하며, 법학 교육의 황폐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가적인 목표도 있다(신인섭 2007).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 교육이념 그리고 교육목표를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2007년 10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성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법학전문도서관은 교육시설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을 뿐이다.

그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이념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으로써 갖추어야 할 목표설정 및 비전,

시설, 인적자원, 소장자료에서 보다 깊이 있고 실질적인 평가 내용을 다룸으로써 앞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이를 위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의 실무자이자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연구를 수행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실제적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이 갖추고 있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으며, 주 이용계층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법학전문도서관의 기본 조건

법학전문도서관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처음 제안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1990년대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법과대학이 발전하고 법학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법과대학 행정책임자인 학장, 교수진 그리고 도서관장을 꼭 필요한 필수 3요소로 하여 이 세 요소의 유대와 상호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홍명자 2000).

또한 홍명자(2006)는 이렇게 법학전문대학원이 오랜 표류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확실해진 시점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법학전문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은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기본조건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미국의 로스쿨은 로스쿨도서관을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로스쿨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임무를 지닌다고 정의하였다(AALS 준칙 6-8 a). 또한 로스쿨도서관이 로스쿨의 교육적인 활동을 위해 적극적이며, 대응하는 활력소로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ABA 기준 제 601조 a).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교육의 실험실 역할을 하며, 교수의 교육과 학생의 학습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연구를 지원해주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의하였다(홍명자 2006, 353-354).

1. 강의실 교육과 임상교육을 보충하는 역할
2. 연구에 필요한 정보지원을 하는 역할
3. 법률정보 자료실로서의 역할

2.2 법학전문도서관의 평가 기준

국내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을 평가한 사례는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를 결정할 목적으로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총 9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이 평가의 제 6장 교육 시설 부문에서 법학전문도서관과 관련된 내용

을 다루고 있으며, 총 11개로 구성된 교육시설 부문의 항목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의 항목은 5개 항목으로 총 102점 중 68점이 배점되었다. 이는 총 1,000점의 평가 점수 중에서 극히 일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1〉은 평가항목과 내용 그리고 배점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법학전문도서관을 다루고 있는 교육시설 평가영역의 총 11개 평가항목 중에서 법학전문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5개 항목뿐이었다. 또한 〈표 2〉는 〈표 1〉의 5개 항목을 각 항목별로 나누고 세부지표와 평가척도 그리고 배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설립 초기부터 법학교육을 위한 실험실로서 법학도서관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였다.

한 예로 “‘법률도서관이 없으면 법률제도가 운용될 수 없다(Desiderio 1982, 292)’는 한마디로 법률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Giblin(1980)은 법과대학의 환경은 법학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여 법률서비스활동을 할 미래의 법조인의 능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여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미국의 로스쿨 도서관에 대한 평가 기준은 매년 발행되는 미국 법조인단체인 ABA

〈표 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의 법학전문도서관 관련 평가항목

평가영역번호	내 용	평가유형	배 점
6-3	법학전문도서관이 설치여부	계획평가	합격/불합격
6-4	법학도서관의 열람석 규모	계획평가	7점
6-5	법학관련 도서 확보 정도	계획 및 실적평가	45점
6-6	법학전문사서의 확보 여부	계획평가	6점
6-9	법률데이터베이스	실적평가	10점
합 계			68점

〈표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의 세부지표별 평가척도 및 배점

항목번호	세부지표(최고점수)	평가척도 및 배점
6.3.1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여부	확보: 합격, 미확보: 불합격
6.4.1-가	학생 정원대비 열람석 확보 비율(4점)	70% 이상: 4점, 60% 이상 70% 미만: 3점, 50% 이상 60% 미만: 2점, 50% 미만: 1점
6.4.1-나	도서관 서고 공간 확보(3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6.5.1	확보 장서 수(15점)	50,000권 이상: 15점, 45,000권 이상: 12점, 40,000권 이상: 9점, 35,000권 이상: 6점, 30,000권 이상: 3점
6.5.2	연간 구입 장서 수(10점)	5,000권 이상: 10점, 4,000권 이상: 8점, 3,000권 이상: 6점, 2,000권 이상: 4점, 2,000권 미만: 2점
6.5.3-가	법학도서의 비율(3점)	3/4이상: 3점, 2/3이상: 2점, 2/3미만: 1점
6.5.3-나	법학 관련 도서종수(3점)	25,000종 이상: 3점, 20,000종 이상: 2점, 20,000종 미만: 1점
6.5.3-다	외국 법학도서(단행본) 구성 비율(2점)	총 장서수 대비 30% 이상: 2점, 20% 이상 30% 미만: 1점
6.5.3-라	최근 구입 도서권수(2점)	2004년~2007년으로 구입한 도서로 제한하여 장기적인 계획하에 도서를 구입하였는지 평가, 우수: 2점, 보통: 1점
6.5.4	법학 관련 저널의 종수(5점)	50종 이상 확보: 5점, 50종 미만 확보: 3점, 30종 미만 확보: 1점
6.5.5	법학 관련 도서의 충실험(5점)	우수: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6.6.1	전문사서의 확보(3점)	1급 정사서: 3점, 2급 정사서: 2점, 준사서: 1점
6.6.2	인적 구성(직원의 수)(3점)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6.9.1	Web-DB 확보 종수(5점)	3종 이상: 5점, 2종: 3점, 2종 미만: 1점
6.9.2	Web-DB의 다양성(5점)	3개국 이상: 5점, 2개국: 3점, 1개국 이하: 1점
계		총 5개 영역 15개 세부항목으로 총배점은 68점

의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참고로 미국 법원은 오래전에 ABA 기준의 준수가 법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대해 법학교육자 및 규제기관들 사이에 널리 공인되어 있다고 인정하였다(Judith 1996). ABA 기준은 총 8개의 장(Chapter)과 부록 등으로 로스쿨의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하였으며, 매년 그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다. 〈표 3〉은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의 항목과 내용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을 교육시설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ABA의 로스쿨 인가

기준은 제 6장에서 도서관과 정보자원(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고, 제 7장 편의시설(Facilities)의 주제에서 로스쿨 도서관(Law Library)의 물리적인 규모, 위치, 디자인 등 로스쿨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시설로써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즉, 교육적인 면에서의 도서관의 기준과 목적 그리고 물리적이고 외적인 시설로서의 도서관을 구분하여 도서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세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ABA의 “Standards for Approval of Law Schools 2008-2009”

항 목	내 용
Standard 601 (일반규정)	a. 로스쿨의 교육활동을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로스쿨 도서관을 유지하며, 교육, 연구, 서비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b. 로스쿨 도서관은 로스쿨 교육, 장학, 연구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하여 충분한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아야 한다.
	c. 로스쿨은 최신기술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도서관을 운영한다.
Standard 602 (관리)	a. 로스쿨 도서관의 발전과 자료의 이용을 위해서 로스쿨이 행정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b. 도서관 정책 수립시 학장과 도서관장이 교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도서관서비스 및 장서개발에 대해서는 학장과 도서관장이 책임을 진다.
	c. 로스쿨 도서관장과 학장이 직원의 선발 및 유지의 책임을 진다.
	d. 로스쿨의 예산은 로스쿨 예산의 일부로 배정되며, 로스쿨 예산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Standard 603 (관장)	a. 로스쿨 도서관의 관리 책임을 가지는 전임 관장을 둔다.
	b. 관장의 선발과 유지는 로스쿨에서 한다.
	c. 관장은 법학과 문헌정보학의 복수 학위와 행정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d. 관장은 법학과 교수의 직위를 부여한다.
Standard 604 (직원)	로스쿨 도서관은 적절한 도서관 서비스와 정보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유능한 직원을 충분하게 두어야 한다.
Standard 605 (서비스)	로스쿨 도서관은 로스쿨의 교육, 장학, 연구, 서비스 프로그램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참고서비스, 서지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a. 로스쿨 도서관은 핵심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도서관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b. 로스쿨 도서관은 다음과 같이 추가 장서를 제공해야 한다. (1) 학생들의 연구와 교과과목에 관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수들의 교육, 연구,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3) 로스쿨의 특수한 교육, 장학, 연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c. 로스쿨 도서관은 장서개발을 위한 명문화된 계획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d. 로스쿨 도서관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합한 장비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Standard 702 (시설)	로스쿨 도서관의 물리적인 시설은 로스쿨의 프로그램, 교수와 학생의 인원, 도서관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모와 위치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3. 법학전문도서관 평가 방법

3.1 법학전문도서관 사서 의견 조사 및 분석

국내 법학전문도서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위하여 평가하였던 것이 유일하며, 평가시 제시되었던 기준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

었다.

특히 Michael(1991)은 사서들이 법학전문 도서관의 실무자로써 도서관의 역할이 법학교육과 어떻게 조화되며, 사서의 업무수행 및 이용자와의 접촉이 교육목표의 달성을 여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아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법학전문도서관의 상황을 가장 많이 접해보고

있고, 법학전문도서관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사서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하여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직접 면담과 설문을 실시하였다.

우선 직접 면담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서울 소재 대학의 법학전문사서 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직접 면담을 실시하지 못한 19개의 법학전문도서관에 총 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참여를 의뢰하여, 이 중 10곳의 사서 1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는 법학전문도서관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사서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질문에 따라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총 5가지로 구성하여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으로 구분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5개 영역 총 37문항이며, 각 문항은 법학전문도서관의 실무자의 관점에서 평가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다.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된 질문지의 질문 영역별 내용과 5점을 최고점으로 한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4>와 같다. 그 밖에 인적자원(사서), 도서관장 그리고 기타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법학전문도서관의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내용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로 중요도에 대한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도출한 분석은 5개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직접면담과 설문지를 통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여 얻은 내용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도서관을 총 8개의 범주로

나누었으며, 특히 법학전문도서관의 중요성, 규모 및 시설, 소장 자료, 인적자원, 기타(이용자 교육)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대상자인 법학전문도서관 사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균점수로 수치화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법학전문도서관의 중요 정도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

사서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그로 인하여 분관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이전의 경우에 비해서 관심과 이용이 증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보면 법을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도서관은 그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며, 법학전문도서관은 매우 중요하는 것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법학전문도서관과 그 구성원인 사서가 이용자인 학생과 교수의 연구와 학습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되고, 노력해야겠지만, 제도적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여 주었다.

사서가 제시한 예를 들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폭넓고 다양한 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마련된다면 학생들과 교수들은 자연스럽게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 시험의 합격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면,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보다는 시험을 준비하는 독서실로서의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였다.

〈표 4〉 질문지를 통한 중요성에 대한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질문영역	질문내용	평균점수	표준편차
총괄	법학전문도서관의 중요성	4.04	.97
시설 및 규모	도서관의 규모 및 편의시설의 중요성	3.80	.75
	도서관 내 열람석 규모의 중요성	3.70	.64
	로스쿨 수업 지원이 가능한 시설의 중요성	3.95	.86
이용자 교육의 중요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	4.35	.65
	법학교육 검색실습 교육의 중요성	4.05	.67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의 중요성	3.60	.66
인적자원	법학을 전공한 사서의 필요성	4.00	.95
	직원의 인원 수	4.65	.67
	직원서비스의 중요성	4.25	.62
	직원의 전문성	4.50	.74
	담당업무에 대한 경험(전공지식)의 중요성	4.25	.70
소장자료	법학관련 자료의 양과 질의 중요성	4.75	.43
	법학관련 자료의 추후 확보 계획	4.40	.86
	Web-DB 자료의 중요성	4.70	.46
	단행본의 중요성	4.50	.59
	멀티미디어 자료의 중요성	3.20	.87
	전자 형태의 자료의 중요성	4.20	.75
	법학도서의 비율의 중요성	4.40	.80
	법학관련 도서 종류 중요성	4.40	.58
	외국서의 구성비율의 중요성	3.75	.54
	최근 구입 도서의 중요성	4.15	.65
	단행본	다양성	4.50
		최신성	4.70
		충분성	4.65
	멀티미디어 자료	다양성	3.55
		최신성	3.75
		충분성	3.60
소장자료	연속간행물	다양성	4.20
		최신성	4.45
		충분성	4.35
	전자자료	다양성	4.25
		최신성	4.40
		충분성	4.35
	Web-DB	다양성	4.20
		최신성	4.40
		충분성	4.35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관련된 의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각 대학은 제시한 기본사항만 충족시키고, 다른 부분에 관심과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법학전문도서관을 실제로 움직이는 운영자로써 사서들은 인가기준에서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인가를 받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 평가항목에 관련된 의견

사서들은 인가기준에서 다루었던 법학전문도서관 평가항목은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것만 몇 가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항목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평가에서 추가되고 수정되어야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4) 시설에 관련된 의견

법학전문대학원은 독립적인 건물을 전제로 인가가 결정되었다. 그로 인하여 법학전문도서관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에 독립적으로 위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보다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정원의 70% 이상의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열람석과 개관 초기여서 시설적인 면은 괜찮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서 해가 지나면 시설확충 및 공간 활용에 대한 전략이 미리 마련되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열람석의 규모와 도서관의 규모 그리고 편의시설의 중요성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설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으며, 법학전문도서관이 정보제공의 장소로 이용되는데 있어서 사서들은 개인 열람석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물리적인 시설에 과잉투자와 지나친 관심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지원이 가능한 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통하여 법학도서관과 연계한 교육이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소장 자료에 관련된 의견

법학전문도서관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소장 자료에 대한 사항은 소장 자료의 양과 질을 동시에 평가하고 아울러 장서개발정책을 제시하는 것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양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고, 질적인 면은 실제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쉽지 않고 현재 미비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실제로 사서들은 소장 자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부족하여 각 법학전문도서관의 사서와 법학과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양서목록을 기준으로 상호협력을 통하여 소장 자료를 구입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 소장 자료에 대하여 우선 각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질문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심사 기준”에서 간단하게 다루었던 각 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성, 최신성, 다양성의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였다.

법학 관련 자료의 양과 질에 대한 중요성을

문는 질문에서 평균 4.75점의 높은 점수가 산출되었고, 자료에 대한 확보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4.40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장 자료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Web-DB(4.70점), 단행본(4.50점), 연속간행물(4.25점), 전자형태의 자료(4.20점), 멀티미디어자료(3.20점)의 순서대로 각 자료별 중요성에 대한 정도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자료를 다양성, 최신성, 충분성으로 세분화하여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모든 항목에서 최신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충분성과 다양성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있어서 최신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6) 인적자원에 관한 의견

현재 법학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는 법학을 전공한 사서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법학과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여 이 두 학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서를 주축으로 담당업무에 따라 충분한 인력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하지만 당장 이것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학전문도서관 사서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의 직원으로 언제든지 부서와 보직의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게다가 고용보장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현 상황은 이것마저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을 살펴보면 3명의 직원을 갖추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사서들은 3명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며, 직원의 수는 무엇보다 서비스의 질과 개관시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단순한 인원의 문제가 아닌 법학전문도서관의 개관시간 및 서비스 제공의 정도와 시간 등에 따라 인원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서들이 생각하기에 직원의 전문성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법학전문도서관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법학전문도서관의 직원에 대한 전문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법학전문도서관 관장에 관한 의견

법학도서관의 관장은 주로 법학과 교수가 겸하고 있으며, 실제로 관장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사서들은 특히 관장은 전공과 경력보다는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는데, 관장에 대한 의견은 각 사서들의 경험과 인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8) 기타의견

사서들은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교육 및 이용자 교육에 대한 계획과 실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서는 이를 장려하거나, 평가하는 항목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수업을 위해서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고, West law 등 외부 업체에서 이용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법

학전문사서, 법학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법학전문사서가 직접 교육을 주관하여 법학과 교수와 함께 법학도서관을 이용한 자료 이용 및 정보 활용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었다.

3.2 법학전문도서관 이용자의 요구 조사 및 분석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제도 개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3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00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총인원인 2,000명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학전문도서관 이용빈도를 조사해본 결과 1주일에 평균 1.72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112명의 학생이 일주일에 1일 이하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주일에 2~3일 이용하는 학생이 46명, 3~4일 이용하는 학생이 29명, 1주일에 5일 이상 거의 매일 이용하는 학생은 13명(6.5%)이었다.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각 항목별로 총 5점을 만점으로 하여 중요한 정도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법학전문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것이 3.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장자료를 대출하기 위한 것이 3.74점으로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수험서와 같은 개인 학습 자료를 가지고 이용하기

위한 것이 3.47점 그리고 Web-DB를 이용한 법률정보 검색 2.78점, 전자형태의 자료 이용이 2.38점, 사서를 통한 주제전문서비스 이용이 1.62점, 휴식 및 여가 활동을 위한 이용이 1.53점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은 소장자료를 열람하고 필요시 대출을 하기 위한 것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개인적인 학습을 위한 독서실과 같은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Web-DB를 이용하여 법률정보를 검색하거나 전자 형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법학전문사서를 통한 주제전문서비스의 이용이 낮은 것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과 비추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법학전문도서관의 중요 정도를 알아본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4.38점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법학전문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총 119명으로 전체의 60%에 해당하였으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52명으로 전체의 26%에 해당되는 인원이었다. 즉,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171명이었으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원도 7명으로 전체의 3%에 해당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학전문도서관의 구성요소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장자료의 양과 질이 4.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Web-DB의 양과 질이 4.26점으로 그 다음이고, 열람석의 규모가 4.22

점, 도서관의 전체적인 규모 및 편의시설이 4.16점, 컴퓨터 사양 및 네트워크의 속도가 3.97 점,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지원이 가능한 시설 이 3.90점, 법학과 출신의 법학전문사서가 3.57 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 교육이 3.01 점인 순서로 나타났다.

총 8개의 세부 항목이 모두 3점 이상인 것을 통해서 주 이용자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법학전문도서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용자들이 현재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5점을 만점으로 하여서 평균 3.38점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인 만족도는 ‘보통’에 해당하는 3점을 조금 넘어선 정도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법학전문도서관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보다 더 실제적이고 이용자 중심적인 평가와 대안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우선 법학전문도서관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람은 13명으로 전체 6.5%에 해당하며, ‘높음’을 나타낸 사람은 83명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8%인 96명이었다. 하지만 만족도가 ‘보통’인 사람이 77명(전체의 38.5%), 그리고 만족도가 ‘낮음’인 사람이 21명, ‘매우 낮음’을 선택한 사람이 6명으로 만족도가 ‘보통’ 이하인 사람이 104명으로 전체의 52%이다. 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는 ‘보통’ 정도였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용자들에게 현재 법학전문도서관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으나 만족도가 ‘보통’인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 이용자가 원하고 있는 사항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법학전문도서관에 만족하고 있는 사항과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족도에 따른 법학전문도서관 항목을 총 6개 선택하여 그 정도를 역시 5점을 만점으로 표기하도록 하였고,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기준”에서 평가 요소로 제시되었던 열람석, 각종 소장 자료의 양과 질 그리고 사서들과의 면담과 설문을 통해 제시 받은 이용자 교육, 사서의 서비스 등을 토대로 만들었다.

현재 법학전문도서관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항목은 직원인 사서의 도움(3.44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Web-DB의 양과 질(3.42점), 이용자 교육(3.17점), 컴퓨터 사양 및 부대시설(3.12점), 소장 자료의 양과 질(3.10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열람석(2.98점)이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서 강조하였던 소장 자료의 양과 질, 시설 면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행 초기이지만 가장 기초적인 틀은 잡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했던 직원(사서)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만족’에 근접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사서의 역할과 노력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비록 3.17점으로 높지는 않지만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법학

전문사서의 서비스와 함께 보다 향상된 이용자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열람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이 모호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기준의 법학과 학부생과 올해 처음으로 입학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열람실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정원의 70% 이상 확보된 경우 최고 점수를 주도록 하고 있다. 즉, 애초부터 개인 열람석의 모자란 좌석은 30%가 넘을 수밖에 없었다. 즉, 실제 사용인원이 더 많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법학전문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존재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자들도 이용하는데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열람실 역시 마찬가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열람석의 좌석 수를 늘이기보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열람실은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학전문도서관을 개인 독서실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이용자의 선입견 역시 개선되어야 할 숙제이다.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자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결과 전체 설문대상자인 200명 중 이용자 교육의 경험이 없는 23명을 제외한 총 177명이 이용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 177명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와 법학전문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내용에 따른 유용한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177명 중 102명이 이용

자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응답자의 58%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그밖에 보통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71명으로 40%를 차지했고, 이용자 교육의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총 4명으로 2%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이용자교육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5점 만점에 3.58점으로 보통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 이용자 교육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은 법학정보 검색 실습 교육으로 5점 만점에 3.73점으로 나타났고, 법학 관련 사이트 소개 및 이용법이 3.58점, 각 사이트 별 법률정보 서비스의 비교가 3.36점, 법학전문도서관 시설 이용법 3.22점, 법학전문도서관 자료에 대한 소개 3.19점, 마지막으로 학술정보원(중앙도서관) 서비스 안내 및 이용법이 3.14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 유용하였다고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현재 자신이 법학전문도서관 이용에 얼마나 익숙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항목에서 5점 만점에 3.36점으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익숙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93명으로 전체 2%에 해당하는 인원이었고, 별 무리 없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95명, 그리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81명으로 기본적인 이용에 별로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 90%에 해당하는 179명이다. 나머지 21명은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3명, 전혀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8명이었다.

분석 결과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이용에 있어서 별 무리가 없다

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학전문도서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에 비해 익숙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익숙하게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직까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법학전문도서관은 일상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학전문도서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일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사서의 도움을 받은 경우와 그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설문 대상인 200명의 학생들 중에 119명이 사서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서서의 도움에 대해서 만족도는 5점을 기준으로 3.94 점,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법학 용어 등 의사 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3.93점으로 도움과 의사 소통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모든 설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의 사서가 법학과 출신이라면 이용하는데 있어서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4.10점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법학전문도서관 사서가 법학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보다 유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 사서가 갖추고 있어야 할 요건을 묻는 항목에서 이용자들은 무엇보다 이용자 요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능력을 우선으로 꼽았다. 5점 만점으로 하였을 경우 4.25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직원의 수와 서비스 제공시간 3.88점, 업무에 대한 실무경력

3.82점, 법학에 대한 전문지식 3.80으로 4점 이내에서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서 현재 대부분의 법학전문도서관이 인원에 따른 어려움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런 이유로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실정인 현 상황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서의 실무경력과 법학에 대한 전문지식 역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상대적인 것을 감안하면 최우선 적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의 충분한 인원 및 서비스의 질과 요구에 대한 신속성을 고려하여 법학도서관 사서들이 법학도서관 업무에 있어서 숙달되고, 노하우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법학전문사서의 고용에 있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실제적인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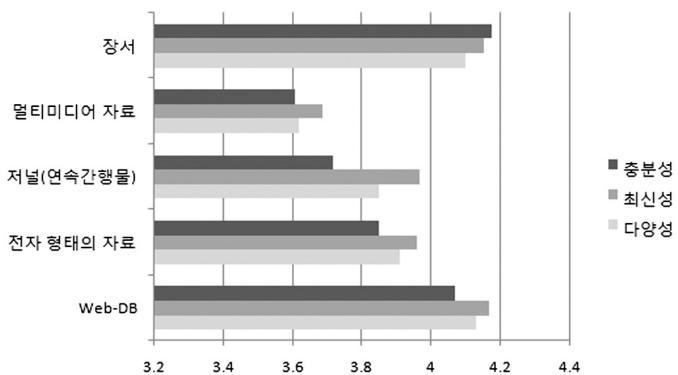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소장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았다. 소장자료를 장서, 멀티미디어 자료, 저널(연속간행물), 전자 형태의 자료, Web-DB로 구분하고 각 소장 자료별로 다양성, 최신성, 충분성에 대한 중요한 정도를 5점을 기준으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기준”에서 양적인 면에 특히 비중을 크게 주어 평가 시 소장 자료의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질적인 면을 추가하고, 양적인 평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 가지의 소장자료 모두 대부분 최신성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서 항목에서만 최신성(4.16점)보다 충분성(4.18점)이 근소하게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머지 항

목에서는 자료의 충분한 양과 함께 다양성도 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즉, 소장자료의 수로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이용자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한편, 앞서 빈도분석을 통한 분석결과에서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이용횟수와 이용목적, 중요

정도와 중요한 항목, 만족도와 항목, 이용자 교육의 효과와 교육내용, 마지막으로 법학전문 서서의 서비스와 사서의 요건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법학전문도서관의 주 이용횟수와 그 이용목적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1> 각 항목간, 항목별 중요도의 비교

<표 5> 법학전문도서관 이용목적 간의 상관관계

	개인 학습	소장 자료열람	소장 자료대출	Web-DB를 이용한 법률정보검색	전자자료를 이용한 자료이용	휴식 및 여가활동
개인학습	-					
소장자료 열람	.202 ***	-				
소장자료 대출	.104	.502 ***	-			
Web-DB를 이용한 법률정보검색	.321 ***	.334 ***	.372 ***	-		
전자자료를 이용한 자료이용	.204 ***	.391 ***	.382 ***	.704 ***	-	
휴식 및 여가활동	.322 ***	.152 **	.107 *	.254 ***	.247 ***	-
사서를 통한 주제전문 서비스 이용	.188 ***	.216 ***	.175 **	.386 ***	.398 ***	.538 ***

* p < 0.1 ** p < 0.05 *** p < 0.01

결과를 보면 이용횟수가 많은 학생일수록 개인 자료를 이용한 학습을 목적으로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교과과정을 위한 중추적이고 법학교육을 위한 정보원이며 법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학전문도서관의 목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학전문도서관의 이용목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자자료의 이용과 Web-DB의 이용도(.704)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서를 통한 주제전문서비스 이용과 휴식 및 여가활동 간의 상관계수가(.538)로 다소 의의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소장자료를 열람하고 대출하는 상관계수가(.502)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은 자료를 열람하고, 대출하여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계수가(.400)에 임박하는 높은 상관관

계는 Web-DB를 이용한 법률정보검색과 소장자료 대출(.372), 전자자료를 이용한 자료이용과 소장자료 열람(.391), 전자자료를 이용한 자료이용과 소장자료 대출(.382), 사서를 통한 주제전문서비스 이용과 Web-DB를 이용한 법률정보검색(.386), 사서를 통한 주제전문서비스 이용과 전자자료를 이용한 자료이용이(.398)에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소장자료를 대출하거나 열람하기 위해서 이용자는 다양한 형태의 소장자료를 이용하며, Web-DB를 이용한 법률정보검색을 하거나, 전자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서의 도움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표 6〉은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법학전문도서관 전체 규모와 편의시설 그리고 열람석의 규모의 상관관계가(.83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

〈표 6〉 법학전문도서관의 중요 항목 간의 상관관계

	열람석 규모	전체규모/편의시설	수업 지원시설	이용자 교육	법학 전문사서	자료의 양과 질	Web-DB 양과질
열람석 규모	-						
전체규모/편의시설	.832 ***	-					
수업 지원시설	.485 ***	.597 ***	-				
이용자 교육	.329 ***	.196 ***	.228 ***	-			
법학 전문사서	.152 **	.200 ***	.238 ***	.582 ***	-		
자료의 양과 질	.319 ***	.518 ***	.438 ***	.201 ***	.308 ***	-	
Web-DB의 양과 질	.423 ***	.493 ***	.410 ***	.324 ***	.302 ***	.592 ***	-
정보통신 시설	.346 ***	.382 ***	.362 ***	.382 ***	.344 ***	.378 ***	.544 ***

* p < 0.1 ** p < 0.05 *** p < 0.01

로 수업지원이 가능한 시설과 전체규모/편의시설의 상관관계가(.597), Web-DB의 양과 질 그리고 자료의 양과 질의 상관관계가(.592), 컴퓨터와 네트워크 성능과 같은 정보통신 시설과 Web-DB의 양과 질의 상관관계가(.544),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의 양과 질 그리고 전체규모/편의시설이(.518)로 0.5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전체 규모/편의시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과의 상관계수가(.597)로 나타난 것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법학전문도서관의 시설에 있어서 실제로 이용자가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 이용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단순하게 외형만 정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법학전문사서와 이용자 교육 간의 상관계수가(.582)로 이용자 교육을 받은 경험 이 있고, 그 중요함을 느끼는 경우 법학전문사서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통 이용자 교육의 주체가 법학 전문사서인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하여 사서로 하여금 법학전문도서관 이용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시설로 대변되는 컴퓨터 사양과 네트워크의 속도 그리고 Web-DB의 양과 질의 상관계수가(.544)로 나타난 것은 Web-DB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힘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7>은 법학전문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교육의 효과와 교육내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6개 항목 모두 0.4 이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검색실습(.600)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그 밖에 법학 관련 사이트 이용법에 대한 교육(.589), 교내 중앙도서관 이용법(.525)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교육내용은 법학전문도서관 이용법으로 상관계수는(.423)이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학

<표 7> 법학전문도서관 이용자 교육의 효과와 교육내용 간의 상관관계

	검색실습	법학도서관 이용법	자료 이용법	사이트 이용법	사이트별 서비스비교
검색실습	-				
법학도서관 이용법	.508 ***	-			
자료 이용법	.475 ***	.783 ***	-		
사이트 이용법	.602 ***	.477 ***	.535 ***	-	
사이트별 서비스비교	.537 ***	.540 ***	.500 ***	.579 ***	-
중앙도서관 이용법	.402 ***	.690 ***	.712 ***	.438 ***	.538 ***

* p < 0.1 ** p < 0.05 *** p < 0.01

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용자 교육을 받음으로써 보다 도서관 이용이 용이해졌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 교육에서 다루었던 교육내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최저(.402)에서 최고(.783)까지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육내용의 연관이 매우 높으며, 상호 유기적인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은 기존 평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 현재 이용자들의 요구와 이용패턴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시된 평가항목을 통하여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단순하게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법학전문도서관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법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 중요한 인식의 전환점인 동시에 사회 전체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

〈표 8〉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계획수립 및 달성	1.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간계획 수립 여부 및 달성실적 - 소장자료 확보, 시설확충 등
시설	1. 정원대비 개인열람석의 확보 비율 2. 개인사물함 설치여부 및 정원대비 비율 3. 법학전문대학원 수업 지원 시설의 가능 여부 및 시설현황 4. 정보통신시설(컴퓨터 사양 및 네트워크 속도)의 성능 5. 이용자 요구조사를 통한 편의시설의 확충 현황
인적자원 (사서)	1. 총 직원(사서)의 수 2. 직원의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3. 법학과 출신의 법학전문사서의 수 4. 사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5. 직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여부 6. 법학전문도서관 근무 기간
소장자료	1. 자료 형태에 따른 총 자료의 수 2. 연간 추가 확보한 자료의 수 3. 각 소장자료의 형태별 종의 수 4. 각 소장자료의 발행기간에 따른 수
정보이용	1. 기간별 대출 도서의 수 2. 최근 1년간 수집된 도서의 대출 현황 3. 기간별 전자형태의 자료 및 Web-DB의 이용 건수 4. 기간별 법학전문도서관 이용자 수
정보서비스	1. 이용자 교육 실시여부 및 횟수 2. 이용자 교육의 내용 및 만족도 3. 사서의 주제전문서비스 및 참고정보 서비스 제공 현황

도의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제시된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은 부족함이 많고, 시급한 보완책과 개선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의 내용이 미비하고 부족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지금의 법학전문도서관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실무자인 사서와 이용자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실제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기준과 평가항목은 실질적인 면이 부족하여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인식과 이용목적은 고려하지 않은 채 외형적인 규모와 눈에 보이는 면만 부각하여 외적인 틀만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셋째, 법학전문도서관이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효과적인 반영을 위한 제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갖추었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 제도와 상호작용이 없다면 유기적인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도서관의 관계는 단지 허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법이라는 학문적인 연구와 다양한 문헌과 자료를 통한 폭넓은 지식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에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법학

전문도서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정보창고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이자 메카의 역할을 보다 더 할 수 있게 하려면 Web-DB를 이용한 법률정보검색과 전자 형태의 자료 이용의 비중이 더 증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법학전문사서가 제공해주는 주제전문서비스의 이용 또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한 수업 또는 학생들로 하여금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법학의 학문적 연구를 지향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갖추어진 법학전문도서관도 그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를 위한 하나의 요소로 인식되었던 법학전문도서관이 아닌 법학전문도서관을 위한 연구를 지향하였다.

법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학문이며, 이러한 법학이 학문적으로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리고 법학전문도서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의 건물과 시설 그리고 소장자료의 양 등 외형적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소장자료의 질과 함께 법학도서관 사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며 법학전문도서관의 내실을 갖추어야 함을 인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연구를 통하여 법학전문도서관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교육인적자원부.
- 문화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7. 『전문도서관 평가지표 개발』. 문화관광부.
- 박민. 2006.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공법학연구』, 7(3): 451-477.
- 홍명자. 2000. 효율적 법학교육을 위한 법과대학 도서관의 제도화 방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303-332.
- _____. 2001.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249-274.
- _____. 2006.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345-373.
- 홍완식. 2007. 법학도서관과 관련한 로스쿨 인가기준에 대한 검토. 『국회도서관보』, 44(12): 2-11.
- American Bar Association. 2009. "The Standard for Approval of Law Schools 2008-2009." ABA. [online] [cited, 2009.04.20]. <<http://www.abanet.org/legaled/standards/standards.html>>.
- Judith W. Wegner. 1996. "Legal Education in the Future" in The National Conference on Legal Information Issues(Edited by T. L. Coggins). Fred B. Rothman & Co.
- Michael J. Slinger. 1991. "Opening a Window of Opportunity: the Library Staff as a Meaningful and Integrated Part of the Law School community." *Law Library Journal*, 83(4): 685-704.
- Robert G. Desiderio. 1982. "The School Library: its Function, Structure, and Management." *Special Libraries*, 73(1): 292.
- Robert Giblin. 1980. "Changes and Challenges: Law School, the New Legal Education and the Law Library." *Law Library Journal*, 73(3): 693-701.